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작물생명과학전공) 내규 일부개정규정(안)

제정 1996. 3. 1.

개정 2016. 12. 26.

개정 2020. 11. 1.

개정 2021. 8.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 과정 및 농림생물자원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준용규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칙」,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교과과정 해설」 및 기타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침 등에 따른다.

제2장 학사과정

제3조(과정 이수 학점 등) ① 학사과정의 졸업(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세부내용은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및 <표 1>에 따른다.

② 「학칙」 제77조제1항에 따른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이하 ‘복수전공 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에 따른다.

③ 학사과정 4학년 학생으로서 전공주임 혹은 학부장이 인정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는 학사과정 졸업 학점에 포함(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교양과목 학점 이수) 교양과목 학점은 「교과과정 해설」 중 ‘학사과정의 교과목 이수’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전공과목 학점 이수) ① 전공과목은 각 학과(부)의 「교과과정 해설」 중 ‘학사과정 전공과목 표준이수형태’에 따라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물학개론(5171.002)’는 타전공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2012년도 입학생부터 전공 선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작물생명과학 학사논문연구(M1672.000100)’ 교과목은 ‘작물생명과학 실험 및 실습 1(5171.312)’ 교과목을 이수하여 논문지도교수가 결정되었을 경우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② 타전공 교과목 중 전공 인정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가. 농업생명과학대학 공통교과목. 단, 교직교과목은 제외.

나. <표 4> 타전공 교과목 중 전공 인정 교과목에 따른다.

제6조(학사학위논문) ①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 취득자 또는 취득 가능한 자로 ‘작물생명과학 실험 및 실습 1(5171.312)’ 교과목을 이수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자 중 졸업을 원하는 자는 학사학위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 신청은 졸업예정학기의 수업일수 1/4선까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심사원, 논문심사위원추천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 연구는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두 사람이 수행할 경우에는 논문 연구내용과 제목을 각각 서로 달리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④ 논문 연구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졸업예정학기에 전공주임 혹은 학부장이 지정하는 날(종강일 2~4주 전)에 그 결과를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⑤ 논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자는 논문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진의 승인을 받아 PDF로 만들어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전공주임에게 제출하고 논문심사위원은 그 내용을 S(급) 또는 U(낙)로 평가를 한다.

제7조(장학금) ① 장학금의 지급은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 9조 1항에 해당하는 자(가계가 빈곤한 자로서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② 장학금은 7학기 이내 재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여 평점 평균이 3.3 이상인 학생 중 신청자에 한해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공이수학점>전체이수학점>연소자’ 순으로 선발한다.

③ 삭제

④ 전과의를 밝히거나 기타 학적 변동이 있는 학생은 장학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8조(전과) ① 「학칙」 제65조,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및 「농업생명과학대학 전과 시행계획」에 따른다.

② 아래의 경우 허용을 제한한다.

가. 의학계, 치의학계, 수의학계, 약학계, 간호학계, 사범계와 유사 학문분야(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로의 전과(부)

나. 실업계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동일계로 입학한 자의 전과(부)

다.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의 전과(부)

제3장 대학원과정

제9조(지도교수의 선정)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10조(과정 이수 학점 등) ① 대학원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 제78조 및 교과과정해설에 따라 교과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며 각 과정별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석사과정: 농학세미나1·2·3 및 작물학세미나1·2 중 2과목

나. 박사과정: 농학세미나1·2·3 및 작물학세미나1·2 중 3과목

다. 석·박사과정: 농학세미나1·2·3 및 작물학세미나1·2 중 5과목

라. 세미나 교과목은 한 학기에 2 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③ 석사과정에서 세미나교과목을 2과목 초과하여 이수하여 박사과정에서 3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전공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공교수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이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④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 외에 농림생물자원학부에서 개설한 교과목 및 농림생물자원학부와 농생명공학부에서 개설한 공통교과목을 원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승인을 받고 수강한 전공과 관련한 타학과(대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타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과정수료학점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가. 타학과(대학) 개설 교과목의 전공인정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타 학과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에 수업담당교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사과정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학부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업담당교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하다.

⑥ 대학원과정을 통산하여 동일교과목 이수 시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산인정)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교과과정 해설」에 따른다.

제12조(논문연구)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은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 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으며 <표 3>과 같이 교과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3조(논문제출자격시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및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4조(논문심사) ① 「학칙」 제78조제3항(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초심) 전에 SCI 또는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2편 이상 출판승인을 받아야 하고, 초심 1개월 전까지 논문 초안(Draft)을 90% 이상 완성하여 전공 교수진에 제출하고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공주임 교수는 매학기 초 예비심사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는 전공 전체 교수로 구성되고, 심사결과는 참석 교수의 심의 결

과에 따른다.

④ 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신청기간에 논문심사위원(석사과정은 위원장과 위원 각 1명, 박사과정은 위원장 1명과 교외 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부위원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일정을 정하여 전공주임 및 논문 심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공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논문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심사위원 4/5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결과가 불합격인 때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결과가 불합격인 때는 동일 학기 중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1999학년도 후기(2000년 8월) 이후 졸업 예정자에 한해 본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2010.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 대학원논문연구에 관하여 개정된 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1조(목적)에 관하여 개정된 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전 입학한 대학원생의 경우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을 인정하며,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재적생 중 소속 변경 동의를 한 경우 개정된 사항을 적용한다.)

부칙(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1> 졸업(수료) 이수학점 기준

기준년도	졸업 (수료) 학점	교양 학점	주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공	전필
2007	130	36	23	25	23	25	24	9
2008~2009					26	22		
2010 이후			26	22				

※ 이수학점 기준 해설

1. 표에 기재된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해야 함.

2. 주전공 학점 (두 항목 모두 동일한 학점

① 단일전공으로 이수 : 소속 학생이 주전공 하나만을 이수할 경우의 주전공 이수학점 수

② 다른 전공 병행 이수 : 소속 학생이 주전공 외에 학칙 제6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전공유형(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또는 교직과정을 함께 이수할 경우의 주전공 이수학점 수

3.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 타 학과(부) 학생이 해당 학과(부)의 전공을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때의 이수학점 수

<표 4> 타전공 교과목 중 전공 인정 교과목

3346.205	세포생물학 (3-3-0) *300.221	519.253	곤충학 및 실험 (3-2-2)
300.312	생화학 1 (3-3-0)	519.304	농약학 (3-3-0)
300.313	생화학 2 (3-3-0)	519.408	유전생화학 (3-3-0)
M1678.000400	유기화학 1 (3-3-0) *3343.205	5191.303	식물영양화학 (3-3-0)
M1678.000500	유기화학 2 (3-3-0) *3343.206	5191.309	식물분자생리학 (3-3-0)
5172.201	화훼학 및 실험 (3-2-2)	5192.252	식물병리학총론 (3-3-0)
5172.203	과수학 및 실험 (3-2-2)	5201.201	농업경제학 (3-3-0)
5172.301	채소학 및 실험 (3-2-2)	5201.202	농산업경영학 (3-3-0)
5172.304	종묘생산학 (3-3-0)	5201.302A	농식품가격론 (3-3-0)
5172.305	시설원예학 및 실험 (3-2-2)	5201.307A	농관련산업과 푸드시스템 (3-3-0)
5172.405A	조경식물학 및 실습 (3-2-2)	5251.301	식품화학 (3-3-0)
		5251.304	식품공학 (3-3-0)

※유의사항

1) 세포생물학(300.221), 생화학 1(300.312), 생화학2(300.313) 교과목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설한 수업만 전공 선택으로 인정

[경과조치]

-2019년도 이전에 유기화학 1(3343.205), 유기화학 2(3343.206) 교과목 중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설한 수업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

-식물생명공학육종(5172.307), 수확물관리학 및 실험(5172.402), 식물생산과 컴퓨터(5172.403), 조경식물학(5172.405), 직업세계의 이해(5173.204), 농업경영학(5201.202), 천연물과학개론(519.410), 농산물가격론(5201.302), 농업관련산업론(5201.307) 교과목을 교과목 폐지 이전에 수강한 경우 전공 선택으로 인정

-2014년도 입학생의 경우 500.171 식물생산과학개론을 1학년에 수강 했을 경우만 전공 선택으로 인정(타 학년 수강금지 및 전공학점 불인정)

<표 6>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의 교과학점 이수 기준

과정	2019전기입학까지		2019후기입학부터	
	최소이수(필수)	최대이수(인정)	최소이수(필수)	최대이수(인정)
석사과정	3학점	3학점	3학점	6학점
박사과정	6학점	6학점	6학점	12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	9학점	9학점	9학점	15학점